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편제, 조직 및 주요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및 주요 임무 등 신설(안 별표 1-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신설(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예정

2) 성별영향평가: 예정

3) 규제사전심사,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통합지원본부의 편제 및 임무 등)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주요 임무 등은 별표 1-2와 같다.

제2조의3(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 조례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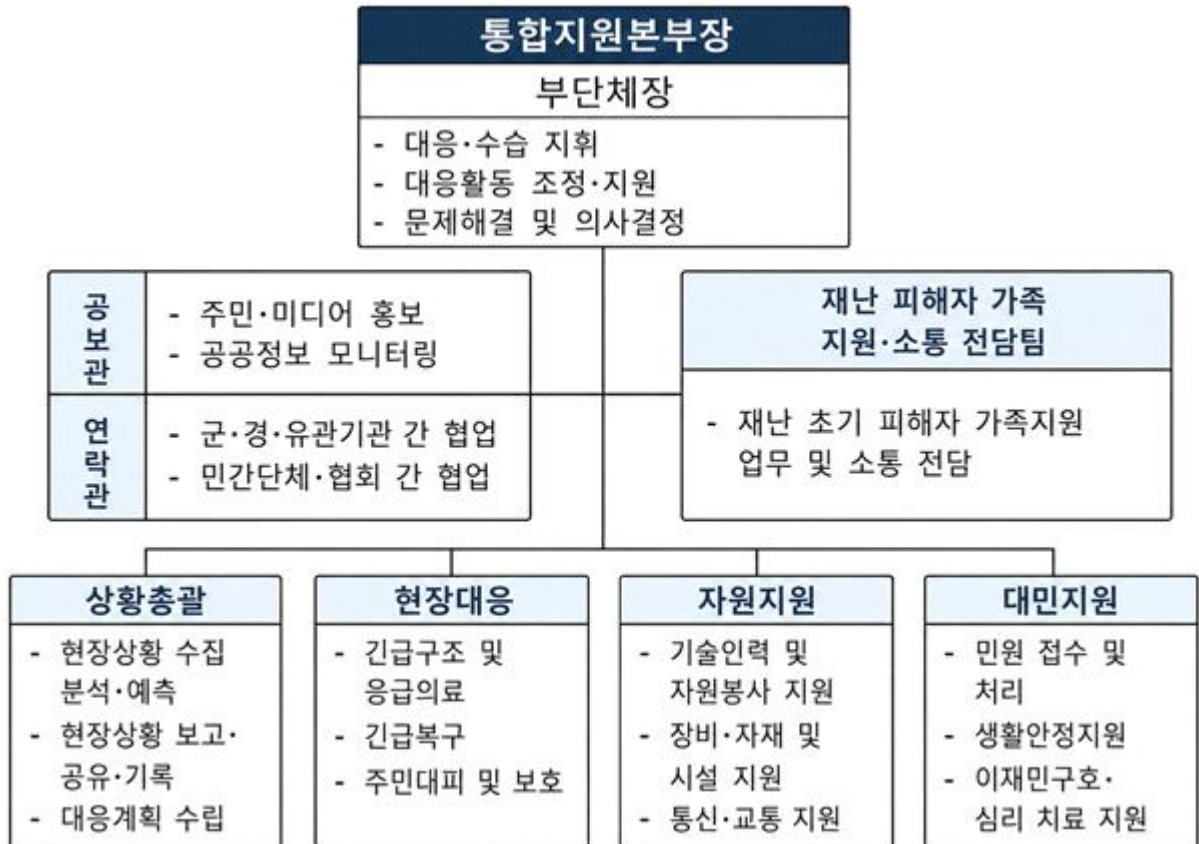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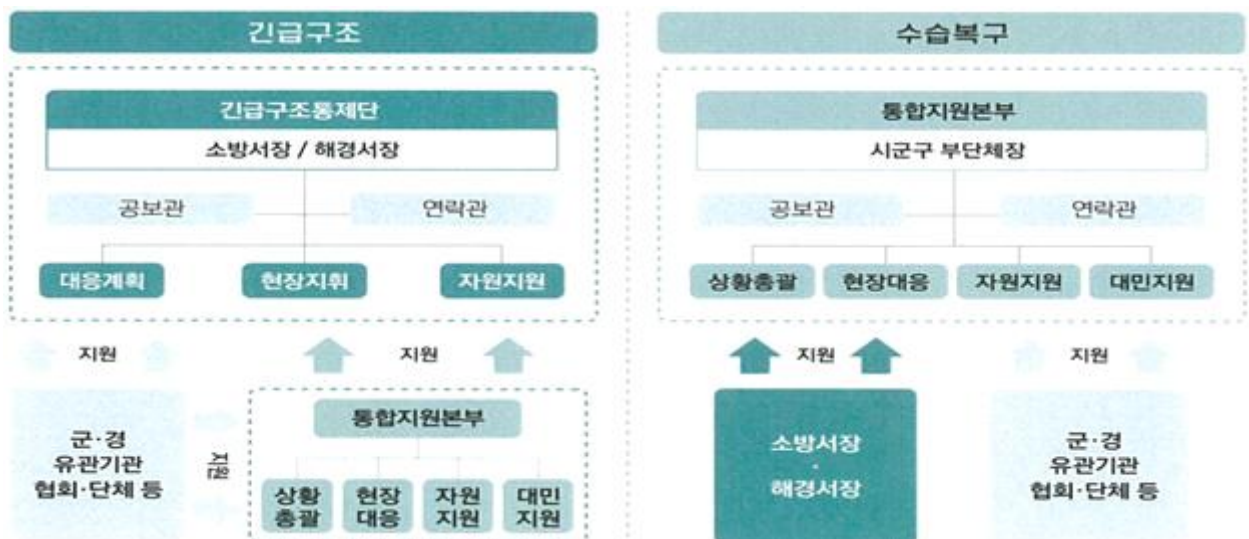
[별표 1-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등(제2조의2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단 체 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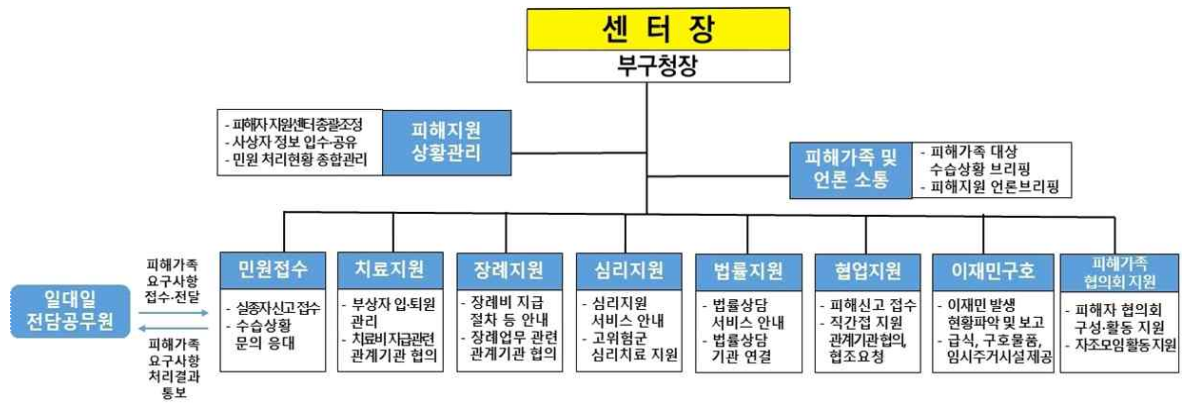
[별표 4]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조직도(제2조의3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 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직도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조직도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2026. 1. 21. 공포, 2026. 7. 22. 시행)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